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8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장철민 · 이수진
권향엽 · 서영석 · 전진숙
박상혁 · 김 윤 · 오세희
이광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·관리, 보호조치, 수출통제,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,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·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,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인공지능(AI)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 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,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,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·조기탐지·신속대응·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,

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).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(이하 “정보공유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정보 입력 대상기관, 입력·열람 정보의 범위, 정보의 열람 권한 및 보안등급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3(인공지능기술 기반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(이하 “위험탐지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위험탐지시스템을 연계·활용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위험 정도(이하 “유출위험정도”라 한다)를 분석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출위험정도의 분석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분석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해당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위험탐지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유출위험정도의 분석 기준·방법 및 분석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4(신속초동대응팀의 구성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에 관계 행정기관 합동의 신속초동대응팀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유출위험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2.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 관련 증거보전이 긴급히 필요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신속초동대응팀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5(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

2. 유출된 산업기술의 확산 방지 등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
3.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
2.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6(산업기술보호기금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보호 및 유출피해 회복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의 출연금

2. 기금운용수익

3. 민간의 출연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

2. 유출된 산업기술의 회수

3. 산업기술 유출 관련 국제소송 지원

4. 그 밖에 산업기술의 보호 및 유출 대응에 필요한 사업

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7(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이 유출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(이하 “피해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피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유출된 산업기술의 회수 지원

2. 유출된 산업기술의 확산 방지

3. 산업기술 유출 관련 국제소송 지원

4.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

7의2. 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원센터의 임·직원

제35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
4의2. 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원센터의 임·직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부정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(이하 “정보공유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② 정보 입력 대상기관, 입력·열람 정보의 범위, 정보의 열람 권한 및 보안등급 등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제16조의3(인공지능기술 기반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(이하 “위험탐지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위험탐지시스템을 연계·활용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위험 정도(이하 “유출위험정도”라 한다)를 분석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출위험 정도의 분석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분석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해당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위험탐지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유출위험 정도의 분석 기준·방법 및 분석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4(신속초동대응팀의 구성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에 관계 행정기관 합

<신 설>

동의 신속초동대응팀을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
1. 유출위험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
2.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 관련 증거 보전이 긴급히 필요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신속초동대응팀의 구성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5(민관산업기술보호협회의 구성 · 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

2. 유출된 산업기술의 확산 방지 등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
3.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

<신 설>

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
2.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6(산업기술보호기금) ①

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보호 및 유출피해 회복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의 출연금

<신 설>

2. 기금운용수익

3. 민간의 출연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

2. 유출된 산업기술의 회수

3. 산업기술 유출 관련 국제소송 지원

4. 그 밖에 산업기술의 보호 및 유출 대응에 필요한 사업

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7(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이 유출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(이하 “피해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피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유출된 산업기술의 회수 지

제34조(비밀유지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	<u>원</u> <u>2. 유출된 산업기술의 확산 방지</u> <u>3. 산업기술 유출 관련 국제소송 지원</u> <u>4.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</u> <u>5.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⑤ 그 밖에 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34조(비밀유지의무)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

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· 7. (생략) <u><신설></u> 8. ~ 10. (생략) 제3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· 6. (생략)	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</u> <u>의 위원</u> 6. · 7. (현행과 같음) <u>7의2. 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</u> <u>원센터의 임·직원</u> 8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3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</u> <u>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</u> <u>람</u>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</u> <u>원센터의 임·직원</u> 5. · 6. (현행과 같음)
---	--